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10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95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제35조(자녀학비보조수당)을 삭제한다.

제44조의1(개인성과급 지급제외) 중 “① ~ ⑥” 을 “1. ~ 6.”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